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2. 1.



김 화 덕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김화덕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전문관이 도입됨에 따라
-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,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적인 정책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배치하고, 정책지원관의 업무로는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조에서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7일 까지 달서구의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지방의회가 주요 정책과 예·결산 등을 처리하는 정책결정기관으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,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화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00822013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2. 1. 26.

발 의 자: 김화덕, 김태형, 이성순, 배지훈,
박정환, 이신자, 김귀화, 조복희,
홍복조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,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5조 신설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제1조~제3조 및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부칙 제6조
- 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
- 3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

다. 비용추계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일부 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”로, “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”를 “정원”으로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의”를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장”을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해 의원 지휘를 받으며,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<u>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<u>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</u></p> <p>② 사무국은 <u>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</u></p> <p>제3조(사무국장) ① (생략)</p> <p>② 사무국장은 <u>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원</u>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<u>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</u>-----.</p> <p>제3조(사무국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총괄</u>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정책지원관) ① <u>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</u></p>

제5조 (생략)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으로 정한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해 의원 지휘를 받으며,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제7조(시행규칙) -----
필요한 -----

-----.

【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】

□ 지방자치법

-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**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-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제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)**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,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**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-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**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·도의 의회사무처,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,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- ② 시·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(定數)는 별표 5와 같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,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·의회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④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(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: 6급 이하

2. 시·군·구의 경우: 7급 이하

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(이하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이라 한다)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사무국장)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.

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전문위원)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

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
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으로 정한다.